

식품등의 표시기준

<목 차>

- 1.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
- 2.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 제품 정보제공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이름	박선영
	담당부서 (과)	식품표시광고정책 과		직급	수의주사
	국장	김성곤		연락처	043-719-2186
	과장	김철희		이메일	psyshine@korea.kr

2023. 12. 28.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								
	2.규제조문	식품등의 표시기준 III. 1. 거 3)								
	3.위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3.12.28~2024.02.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 업계 자율로 주류에 열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열량을 확인하기 어려워 개선 필요하다는 문제점 제기</p> <p>○ 주류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활자크기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소비자가 열량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개입을 통해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음</p>								
	7.규제내용	주류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란을 마련하여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로 굵게 표시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p>주류에 열량을 스스로 표시하는 영업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주류에 열량을 스스로 표시하는 영업자</td> <td>70개 업체, 344개 품목</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주류에 열량을 스스로 표시하는 영업자	70개 업체, 344개 품목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주류에 열량을 스스로 표시하는 영업자	70개 업체, 344개 품목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소비자가 주류 제품에 열량을 쉽게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36.05		36.05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일몰설정 예외기준	대분류	소분류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36.05	0	5.19	
15.규제정비 계획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4)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주류는 현재 영양표시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업계 자율로 '열량'을 표시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주류의 열량 표시가 주표시면 측면 등에 회색 등으로 표시되어 잘 보이지 않게 표시되어 있어, 잘 보이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23년 국정감사 신현영 의원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10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시
규제대안1	대안명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
	내용	영업자가 자율로 주류에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별도 표시란 마련하여 14포인트 이상 활자로 굵게 표시
규제대안2	대안명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2)
	내용	빈병 보증금 표시와 같이 심벌 마크를 마련하여 열량을 해당 마크로 표시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기존 포장재 및 디자인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함	주류 열량 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음
규제대안1	주류 열량 표시 가독성 향상되어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기존 포장재 디자인 변경 비용 발생
규제대안2	주류 열량 표시 가독성 향상되어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마크'를 정하기까지 디자인 등 비용 발생 및 시간 소요 기존 포장재의 디자인 변경 비

		용 발생 뿐 아니라 해당 마크로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여 업체 고유 디자인 변경 우려
--	--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열량을 표시하는 주류 관련 협회(국내)	'23.11.9(비즈허브서울센터/대면), '23.11.23(부산 웨백스/대면) (논의내용) 14포인트 이상 활자로 굵게 별도 표시란을 마련하여 주표시면 중앙 하단에 표시	표시위치까지 명시하는 것은 재검토 요청	수용
열량을 표시하는 주류 관련 협회(수입)	'23.11.28(오송/대면) (논의내용) 14포인트 이상 활자로 굵게 별도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	별도 없음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규제대안 1 : 주류에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14포인트 이상 활자크기로 별도 표시란을 마련하여 굵게 표시하도록 함
- 주류 열량 자율표시는 건강관심 증가에 따른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여 업계에서 자율로 표시하고 있음을 고려해, 소비자가 열량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류 열량 표시에 대해 활자크기 등으로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소비자가 주류 열량을 더 쉽게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식품의 표시정보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단임
 - 주류 '열량'은 일정 매출액(주종별 120억) 이상인 일부 업체 자율로 표시하고 있으며, 포장지 교체 시 기존 포장지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부여하여 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미적용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해당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해당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미적용	해당 없음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해당 없음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	-

○ 타법사례

(유사입법사례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I. 1. 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표시하여야 함

(유사입법사례 2)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1. 카.

- 주류 이외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과 함께 “에탄올 1% 미만 함유”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같은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함

(유사입법사례 3)

- 소주병, 맥주병 등 제품 라벨에 빈병 보증금을 초록색 병 모양의 심벌마크와 금액으로 크게(18mm 이상) 표시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36.05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2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6.05		36.0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36.05		36.05
기업순비용		36.05	연간균등순비용	5.19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영업자가 주류에 '열량'을 스스로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사항으로 규제 강화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 포장지 소진을 위하여 1년 이상 유예기간(시행일 2026.1.1.)을 부여하여 피규제자가 규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행정환경에 따른 별도 조직, 인력 등이 요구되지 아니하여 행정적 집행가능성에 문제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예산이 요구되지 아니하여 재정적 집행이 가능성에 문제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피규제자 대상 간담회 등 의견수렴('23.11.9, 11.23, 11.28.)

2. 향후 평가계획

신설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업자에게 홍보·교육하고 모니터링 계획임

3. 규제 정비계획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는 필수지방산 3종에 대한 오차범위 신설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4)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추가된 필수지방산 3종에 대해 허용오차범위 마련	'23.6월

4. 종합결론

○ 건강한 음주 습관을 위해 영업자 자율로 주류에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열량 표시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은 36백만원 수준이나, 기존 포장지 사용을 위한 유예기간을 1년이상 부여하고, 타 법령에 의한 표시 관련 개정사항과 시행을 동일하게 운영하여 업체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됨
- 직접 계량하기 어려우나, 표시방법 강화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우리 국민의 건강한 음주습관 형성을 지원하여 음주로 인한 의료비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게 되므로 규제강화에 따른 비용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됨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806억원('19.기준)으로 당해연 GDP 0.7%에 해당
- 의료비(22.8%, 3조6,160억원), 생산성 저하액(33.3%, 5조2,633억원) 등
* 출처: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22.)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2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6.05		36.0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36.05		36.05
기업순비용		36.05	연간균등순비용	5.19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주류 열량 표시하는 영업자		
활동제목	포장지 동판 교체		
비용항목	기타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6	43,000,000	36,058,138
	2027	0	0
	2028	0	0
	2029	0	0
	2030	0	0
	2031	0	0
	2032	0	0
	2033	0	0
	2034	0	0
	2035	0	0
	합계	43,000,000	36,058,138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표시대상 품목수 x 동판 교체비 x 1/2		
근거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량을 표시하는 품목수: 344개('23.11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주류는 영양표시 대상이 아니며, 일부 업체에서 자율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협회를 통해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하거나 열량을 표시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업체 및 품목수 현황을 확인하였음(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6개 협회) ○ 구매빈도: 1회(매번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1회성 발생 비용임) ○ 동판 교체 비용: 평균 25만원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 문의('23.9월) ○ 타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원산지, 친환경 인증 등), 식품표시 광고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이 개정되어 업체가 포장재를 변경하는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내용도 함께 반영하도록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행일을 동일(짜수연도1월1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에 따른 예상 비용은 '대상 식품 품목수 X 동판교체비용' 의 1/2로 적용함 		

	<p>○ 참고로 다음 사항을 가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기간은 1년 이상 부여하여 기존 포장지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 폐기비용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영업자가 자율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열량’ 분석 검사 추가비용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신제품의 경우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포장지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으므로 추가 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 제품 정보제공 확대											
	2.규제조문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3) 및 [표 4]											
	3.위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3.12.28.~2024.02.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추진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미료를 사용하여 당류 함량을 낮추고 무당, 제로슈거,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는 제품이 덜 달거나 열량도 낮춰진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감미료와 열량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 필요성 제기 <p><정부개입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류(단당류와 이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고 무당 등 당류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류’에 대한 정보만이 편향되게 제공되지 않도록 감미료를 사용하였으며, 열량까지 낮춰진 것이 아니라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감미료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정부개입을 통해 법제화 할 필요성 있음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미료를 사용하여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조표시와 함께 감미료, 열량에 대한 정보를 함께 표시 ○ 소비자가 식품 제조·가공 시 사용한 감미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식품첨가물의 명칭 이외에 ‘용도(감미료)’를 함께 표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미료를 사용하여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조표시와 함께 감미료, 열량에 대한 정보를 함께 표시 ○ 소비자가 식품 제조·가공 시 사용한 감미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식품첨가물의 명칭 이외에 ‘용도(감미료)’를 함께 표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감미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무당, 무가당으로 강조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포함)</td> <td>3,012개 업체 55,822개 품목</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일반국민, 소비자단체, 전문가</td> <td></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감미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무당, 무가당으로 강조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포함)	3,012개 업체 55,822개 품목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소비자단체, 전문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감미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무당, 무가당으로 강조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포함)	3,012개 업체 55,822개 품목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소비자단체, 전문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p>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당류 대체하는 감미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당알코올 포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p>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5,851.27		5,851.27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5,851.27	0	843.86	
15.규제정비 계획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4)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p> <p>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p> <p>가. ~ 사. (생 략)</p> <p>아. 영양성분등</p> <p>1) ~ 2) (생 략)</p> <p>3) 영양강조 표시기준</p> <p>가) ~ 라)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p> <p>1. -----</p> <p>가. ~ 사. (현행과 같음)</p> <p>아.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무당’, ‘무가당’ 및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당류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p> <p>(1) 감미료(감미료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 또는 ‘당알코올 함유’ 를 해당 강조표시 바로 옆에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p> <p>(2) 가) (1) 및 (2) 중 ‘저열량’ 또는 나) (1)부터 (3)에 따른 ‘열량 감소’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을 해당 강조표시 바로 옆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p>

현 행	개 정 안								
	<p>는 열량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를 대신하여 ‘저열량 제품이 아님’ 또는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 을 해당 강조표시 바로 옆에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는 열량을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4) (생 략)</p> <p>[표 4]</p> <table border="1" data-bbox="161 1113 673 1413"> <thead> <tr> <th>식품첨가물의 명칭</th> <th>용 도</th> </tr> </thead> <tbody> <tr> <td>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td> <td>감미료</td> </tr> </tbody> </table>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 도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감미료	<p>4) (현행과 같음)</p> <p>[표 4]</p> <table border="1" data-bbox="802 1113 1315 2065"> <thead> <tr> <th>식품첨가물의 명칭</th> <th>용 도</th> </tr> </thead> <tbody> <tr> <td>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감초추출물 네오팜 D-리보오스 스테비올배당체 D-자일로오스 토마틴 효소처리스테비아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td> <td>감미료</td> </tr> </tbody> </table>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 도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감초추출물 네오팜 D-리보오스 스테비올배당체 D-자일로오스 토마틴 효소처리스테비아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감미료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 도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감미료								
식품첨가물의 명칭	용 도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감초추출물 네오팜 D-리보오스 스테비올배당체 D-자일로오스 토마틴 효소처리스테비아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감미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당류를 대신하여 감미료 사용하고 무당 등 강조하는 제품이 음료 뿐 아니라 소주, 과자, 초콜릿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자 오인 개선 필요('23년 국정감사 최연숙 의원실 등)
 - 소주와 같은 주류는 대부분 '알코올'에 의한 열량이므로 무당(제로슈거)로 강조하는 제품과 기존 제품간 열량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제로슈거 소주가 열량까지 낮춰진 것으로 소비자 오인·혼동
 - 또한 과자, 초콜릿가공품 등의 경우에도 열량은 원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탄수화물이나 지방 또는 단백질에 의해 기인하므로, 당 함량을 일부 낮추었다고 하더라도 열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음
 - 따라서 무당 등 강조한 제품이 덜 달거나, 열량이 낮은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감미료 사용(달다), 열량(낮지 않다)'에 대한 추가 정보 등 개선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당류를 대신해 감미료 사용하고 무당, 설탕제로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 개입을 통한 법제화 추진이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유지(감미료와 열량에 대해 영업자 자율로 표시하고 일부 식품첨가물에 한해 용도를 표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미료 사용하고 무당 등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 감미료 사용, 열량에 대한 정보를 자율로 표시 ■ 감미료가 주용도인 식품첨가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용도'를 표시하도록 함

규제대안1	대안명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 제품 정보제공 확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미료를 사용하고 무당 등 당류에 대해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미료 및 열량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소비자가 원재료명을 통해 감미료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감미료)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
규제대안2	대안명	감미료를 사용하여 당 함량을 낮추는 경우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 강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 '감미료'는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당', '무가당' 표시 불가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판 교체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당, 무가당 등으로 당류에 대해 강조한 제품에 감미료가 사용되어 있음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움
규제대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류를 강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미료와 열량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에 무당 등 강조한 제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 제품 선택권 보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미료 함유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동판 교체비용 발생 가능
규제대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미료 사용하는 경우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 오인 혼동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무당', '제로슈거' 등으로 강조하는 제품에 대한 동판 교체비용 발생 가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무당 등 강조한 제품 관련 업계 및 협회	'23.1.19.(비즈허브 서울센터), '23.7.12.(공항철도회의실), '23.8.11.(공항철도회의실), '23.9.21.(식품안전정보원회의실), '23.11.9.(공항철도 회의실) '23.11.17.(공항철도 회의실)	(1)용도를 함께 표시 식품첨가 물 확대: 동의 (2)무당, 무가당 강조 경우, '감 미료 함유': '당알코올 함유 표시 허용, 정 보표시면에 표시 요청 (3)일부 식품유 형은 '총열량' 표시 허용	일부수용 -당알코올 함유 로 표시가능 -'열량을 낮추지 않음 등 문구 대신 '총열량' 표시 허용
소비자단체	'23.1.19.(비즈허브서울센터), '23.8.11.(공항철도 회의실), '23.9.21.(식품안전정보원회의실), '23.11.17.(공항철도 회의실)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지 않도 록 무당, 무가 당과 같은 당 류 강조표시에 대한 추가정보 필요	수용
전문가	'23.5.30~6.7.(서면), '23.8.12(공항철도 회의실), '23.8.24.~8.28.(서면), '23.9.21.(식품안전정보원회의실), '23.11.17.(공항철도 회의실)	무당, 무가당 등 강조하는 제품에 대한 열량과 감미료 에 대한 추가 정보제공 필요	수용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규제대안 1 : 소비자가 무당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는 제품을 덜 달거나 열량도 낮아진 것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규정 보완
- 식품을 덜 달게 섭취하는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당류 뿐만 아니라 당류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감미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당, 무가당 등 강조 표시와 함께 감미료와 열량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무당, 무가당 등으로 당류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당류를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와 열량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식품의 표시정보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단임
 - 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식품에 사용해도 안전하나, 설탕에 비해 단맛 강도가 강해 덜 달게 먹는 식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체중 조절이나 비만 예방 등 효과가 없음(WHO guideline, '23.5월)
 - 국민이 덜 달게 먹는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한 경우에는 제품 특성을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는 것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미국) '무당' 등과 같은 용어는 소비자가 체중조절, 저열량 식품과 연관지어 인식하므로, 당류 강조는 '열량'과 연계되어 표시하도록 함

무당(free sugars, zero sugars)	무가당(no added sugar)
21CFR 101.60 (c) Sugar content claims	
<p>(1) 'sugar free, no sugar, zero sugar' 와 같은 용어: 소비자가 해당 용어를 표시한 제품이 열량이 낮거나 낮아진 것으로 기대하므로, 다음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p> <p>(i) 당류가 1회 섭취량 당 0.5g 미만</p> <p>(ii) 당류 또는 소비자가 당류로 이해하는 원재료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다만 당류 포함되어 있다면, 'adds a negligible amount of sugar' 등 표시하여야 함</p> <p>(iii) 저(low), 무(free) 열량이거나 열량을 낮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함</p> <p>(A) 'low calories' 또는 'reduced calorie' 또는 열량 비교 강조기준에 해당함을 표시하거나,</p> <p>(B) 저열량 등의 기준에 맞지 않다면, 'not a reduced calorie food', 'not a low calorie food' 또는 'not for weight control' 을 개별 강조표시 마다 표시하여야 함</p>	<p>(2) 'no added sugar' 는 다음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p> <p>(i) 당류 또는 첨가당을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당류가 함유된 원재료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p> <p>(ii) 첨가당이 포함되어 있는 원재료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잼, 젤리, 농축과일주스 등)</p> <p>(iii) 효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원재료들에 의한 당 함량을 초과하도록 당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p> <p>(iv) 유사하고 이를 대체하는 식품은 일반적으로 첨가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p> <p>(v) 저열량 등 기준에 맞지 않다면, 'not a low calorie food' 등의 표시와 '당류와 열량에 대한 정보를 영양정보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표시' 를 하여야 함</p>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가별로 무첨가 등 강조문구에 대해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문구를 사용하며, 이 경우 추가 문구는 '강조 표시'와 인접하도록 동일한 면에 동일하게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함

* Nutrition and Health Claims(CAC/GL 23-1997) 7-3

○ 타법사례

(유사입법사례 1)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1. 카.

- 주류 이외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과 함께 “에탄올 1% 미만 함유”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같은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하여야 함

(유사입법사례 2)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3) 라)

- ‘무가염’ 강조하는 제품이 나트륨(염)의 ‘무’ 강조표시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강조표시 근처에 ‘무염 제품이 아님’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 제품 정보제공 확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5,851.27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 제품 정보제공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5,851.27		5,851.2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5,851.27		5,851.27
기업순비용		5,851.27	연간균등순비용	843.86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영업자가 스스로 '무당', '무가당' 및 이와 같은 표현으로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사항으로, 규제 강화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 포장지 소진을 위하여 1년 이상 유예기간(시행일 2026.1.1.)을 부여하여 피규제자가 규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행정환경에 따른 별도 조직, 인력 등이 요구되지 아니하여 행정적 집행가능성에 문제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예산이 요구되지 아니하여 재정적 집행이 가능성에 문제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피규제자,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23.1.19, 7.12, 8.11, 9.21, 11.9, 11.17.)
-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23.5.30~6.7, '23.8.24~8.28.)

2. 향후 평가계획

신설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업자에게 홍보·교육하고 모니터링 계획임

3. 규제 정비계획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추가된 필수지방산(3종) 허용오차범위 마련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 1. 아. 4)	필수지방산 3종(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DHA 합)에 대한 허용오차범위 마련	'23.6월

4. 종합결론

- 식품을 덜 달게 섭취하는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와 '열량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비만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WHO guideline, Use of non-sugar sweeteners, 2023.5월>

- 감미료를 체중 조절이나, 비만 등의 비전염성 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함(WHO recommendation)

-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은 약 58억원 수준이나, 기존 포장지 사용을 위한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부여하여 업체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됨
- 이에 반해 표시강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효과를 직접 계량하기는 어려우나,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우리 국민이 덜 달게 섭취하는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여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는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됨

※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4,679억원('19.기준)으로 당해도연 GDP의 0.7%

- 의료비(51.3%, 5조8,858억원), 생산성저하액(20.5%, 2조3,518억원) 등

* 출처: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18.)

○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다음과 같음

- 비만유병률(전체) ('10.) 30.9% → ('15.) 33.2% → ('20.) 38.3%

- 비만유병률(19세이상남자) ('10.) 35.1% → ('20.) 48.0%

- 비만유병률(남학생) ('10.) 6.8% → ('20.) 15.6%

- 비만유병률(여학생) ('10.) 4.2% → ('20.) 8.4%

* 출처: '20년 국민건강통계(질병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2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 제품 정보제공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5,851.27		5,851.2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5,851.27		5,851.27
기업순비용		5,851.27	연간균등순비용	843.86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 제품 정보제공 확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감미료를 사용하고 무당 등으로 당류 강조하는 영업자		
활동제목	포장지 동판 교체		
비용항목	기타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6	6,977,750,000	5,851,271,415
	2027	0	0
	2028	0	0
	2029	0	0
	2030	0	0
	2031	0	0
	2032	0	0
	2033	0	0
	2034	0	0
	2035	0	0
	합계	6,977,750,000	5,851,271,41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표시대상 품목수 X 동판제작비 X 1/2		
근거설명	<p>표시대상 품목수 X 동판제작비 X 1/2</p> <p>○ 감미료를 원재료명에 표시하는 제품수: 55,822개('22.)</p> <p>– 감미료를 사용하면서 ‘무당’ 등 강조하는 제품은 업체별 일부에 해당하므로 감미료를 사용하고 원재료명에 표시하는 제품수에 포함됨</p> <p>* 출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p> <p>○ 구매빈도: 1회(매번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1회성 발생 비용임)</p> <p>○ 동판 교체 비용: 평균 25만원 소요</p> <p>* 출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 문의('23.9월)</p> <p>○ 타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원산지, 친환경인증 등), 식품표시광고법령이 개정되어 업체가 포장재 변경하는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내용도 함께 반영하도록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행일을 동일(짜수연도1월1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에 따른 예상 비용은 ‘대상식품 품목수 X 동판교</p>		

	<p>체비용' 의 1/2로 적용함</p> <p>○ 참고로 다음 사항을 가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기간은 1년 이상 부여하여 기존 포장지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 폐기비용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감미료 사용하고 무당, 무가당 등강조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신규업체에 대한 별도 진입장벽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신제품의 경우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포장지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으므로 추가 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